

경운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7조에 의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법인사무국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호선에 따른 미선출 상태에서의 회의 또는, 부재시 회의는 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사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장 징계의 절차

제6조(징계사유 및 종류)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7할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 의결요구는 정관 제68조에 따른다.

제10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화로 징계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며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유가 있다고 결정될 때는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주문과 이유를 밝혀 의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임면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재심위원회

제16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 기타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송선학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심사)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증인의 채택,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리한 때에는 재심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23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보를 작성하여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심결정의 효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25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7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27.>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이전에 송선학원 「정관」 개정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위계질서 문란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4.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	정직	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직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징계종류						
징계사유						
요구자의 의 견						
첨부서류	1. 징계혐의자 이력서 2. 징계혐의자 근무성적표 3. 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4. 기타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요구자 직위 : 성 명 : (인)						
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사유설명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사유 근 거						
<p>위와 같이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함.</p> <p>년 월 일</p> <p>학교법인 송선학원 이사장(인)</p> <p>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각서를 제출할 것. 2.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진술 할 것. 3. 출석진술, 서면진술,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처리함.					
학교법인 송선학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함. 년 월 일 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귀하 절 취 선 진술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위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개회일시				개회장소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p>위와 같이 의결함.</p> <p>년 월 일</p> <p>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징계위원회</p> <p>위원장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간 사 (인)</p>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분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문						
이 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징계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간 사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송선학원(경운대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문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송선학원 이사장 (인)</p> <p>귀하</p>						
<p>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청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재심청구 사유						
첨부서류	1. 징계의결서(또는 처분통지서) 사본 2. 재심에 필요한 증거					
<p>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p> <p> 년 월 일</p> <p> 청구인 (인)</p> <p>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8호 서식】

재 심 의 결 서

개회일시				개회장소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재심의결 주문						
이유						
<p>위와 같이 재심 의결함.</p> <p>년 월 일</p> <p>학교법인 송선학원 직원재심위원회</p> <p>위원장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